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02

발의연월일: 2022. 10. 13.

발 의 자:윤영석·강기윤·구자근

박대수 · 박대출 · 박형수

서범수 · 안철수 · 윤상현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 규모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이하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세 특례의 도입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업자")는 특례 도입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익구조 악화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하여도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안 제106조의11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삭제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업자"라 한다)가 공급한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u>.</u>
호의2, 제5호, <u>제9호의2, 제9호</u>	<u>제9호의2</u>
<u>의3,</u>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u><삭 제></u>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	
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u>게 공급하는 자동차</u>
10. ~ 13.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u> 설>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1(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 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 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 차판매업자"라 한다)가 공급한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